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나2025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나20256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338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안

담당변호사 곽정훈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2. 10. 20.

판결 선고 2022. 12. 15.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3383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와 피고 B 사이에 2018. 9. 5. 체결된, D와 제1심 공동피고 C 사이에 2018. 10. 18.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8. 9. 5. 접수 제96665호로 마친, 제1심 공동피고 C은 같은 등기소 2018. 11. 14. 접수 제12358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B의 항소이유를 살펴보면,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7째 줄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인'을 '피고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장창국

판사한승철

판사하승수

별지